

#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

(전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19.  
제출자 : 전준호 의원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

(안 제3조)

- 나. 안산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평가 (안 제5조)

- 다.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(안 제 6조)

- 라.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근거 마련

(안 제 7조)

- 마.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(안 제 8조, 안 제 9조)

## 3. 조례(안) : 붙임 1

## 4. 관련법령 :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(붙임2)

: 장애인복지법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(붙임 3)

- 조례 제5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
- 조례 제6조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

## 6. 기타 참고사항 : 없음

## 【불임 1】

###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「안산시 장애인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」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장애인건강권법’이라 한다)」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,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"건강권"이란 질병 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재활운동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·경제적 차별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,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3. "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"이란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, 건강교육의 이수,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, 체육활동체험 및 영양개선,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활동을 말하며,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리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.
4.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장애인건강권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
-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성보호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, 낮은 교육수준, 의료 차별, 적정하지 못한 고용·노

동·주거 환경,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민의 책무)** 안산 시민은 안산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및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안산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6조에 따른 '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'을 기초로 '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'과 연계하여 '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'(이하 '시행계획'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고,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산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·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시장은 '시행계획'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6조(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)**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
2.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(단,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, 체육시설,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보장도 포함한다)
3.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
4.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
5.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

6.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

**제7조(협력·지원)** ① 시장은 ‘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’ 및 ‘경기도 장애인건강 관리지원센터’가 안산시에 지정·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등의 정책효율을 높이고 민관협력을 위해 안산시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, 장애인정책 전문가, 병·의원 및 의료인, 장애인 단체 구성원 및 장애인,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업 등의 위탁)**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·의료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재정지원 등)**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·의료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5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4. 26.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 평가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근거 마련을 유보하고 자치단체(도, 시)간의 사무를 조정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지원근거를 삭제함 (안 제6조)
-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경기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지정 노력 관련 조항 마련 (안 제7조제1항)
- 민관협력과 관련한 정책협의회구성 등을 삭제함 (안 제7조제2항)

# **안산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5조 중 “평가하여야 한다”를 “평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시행 할  
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지정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”  
를 “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.

# 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시장은 「장애인건강권 법」 제6조에 따른 「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」을 기초로 「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」과 연계하여 「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」(이하 「시행계획」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고,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6조(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)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~7.(생략)</p> <p>제7조(협력·지원) ① 시장은 「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」 및 「경기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」가 안산시에 지정·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등의 정책효율을 높이고 민관협력을 위해 안산시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, 장애인정책 전문가, 병·의원 및 의료인, 장애인 단체 구성원 및 장애인,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----- 평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) ----- 시 행 할 수 있다.</p> <p>1.~7.(원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협력·지원) ① -----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	〈삭 제〉